

‘2003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특허청이 주최한 ‘2003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 박람회’가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3,000~4,000여명씩 참관하는 등 성황리에 코엑스(COEX)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만 기술이전 상담건수가 400여건에 이르고 실제 기술이전계약 추진건수가 20여건에 달했다고 특허청은 발표했다.

특히 ‘가축생산성 향상 유산균’ 특허기술을 갖고 (주)오비티와 현장에서 직접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농촌진흥청의 이희삼 박사는 ‘이번 박람회가 특허기술이전 활성화의 모

태가 되어 많은 연구자 및 발명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 151개의 특허기술이 전시된 이번 박람회는 특허기술이전을 원하는 투자자나 사업가들이 전시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모든 전시기술에 대해 제공되는 기술성, 사업성 및 권리성이 포함된 전문가의 평가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등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특허기술을 이전하려는 열기로 가득했다.

이번에 소개된 특허기술은 행사 이후에도 한국발명진흥회 알선사업부의 홈페이지(www.patentmart.or.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특허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자금 지원 정보를 볼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카르마온라인’ 도메인 둘러싼 법정 공방 일단락

서울지방법원, 온라인 게임업체 넥슨의 ‘카르마’ 상표사용 금지

온라인 게임업체인 드래곤플라이(대표 박철우)는 넥슨(대표 정상원)이 자사의 온라인 게임과 같은 이름의 인터넷 도메인 ‘karma-online.com’과 ‘karma-online.co.kr’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넥슨은 드래곤플라이가 개발한 게임 ‘카르마’가 인터넷 서비스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자사가 마이서스(Mythos)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던 게임의 이름을 ‘카르마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karma-online.com’과 ‘karma-online.co.kr’에서 이 게임을 서비스 해왔다.

이어 드래곤플라이와의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자 자사의 메인 홈페이지 이름을 엑사인(exine.co.kr)으로 변경하였으나, 사용자들이 ‘karma-online.com’과 ‘karma-online.co.kr’에 접속하면 ‘exine.co.kr’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이에 드래곤플라이는 넥슨을 상대로 법원에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지방법원은 드래곤플라이가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넥슨의 ‘카르마’에 대한 상표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판결에 따르면, 넥슨은 앞으로 ‘카르마 온라인(karma-online)’을

다음, MSN, 코리아닷컴, 드림위즈, 구글, NATE, 코리아 와이즈넷, 하자아이 등 주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등록 할 수 없다.



▲ 온라인 게임업체인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엑사인에 등장하는 카르마.

이 사건에서 드래곤플라이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대표 변호사 황주명)의 최우영 변호사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상표권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며,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부정 경쟁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 기술혁신 세계 5위권에 진입

한국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들을 제치고 기술혁신도에서 세계 5위권에 진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19일 보도했다.

미국 특허전문 조사업체인 CHI리서치가 특허건수 및 파생되는 연관 특허건수, 그리고 상업화 정도를 기준으로 평균해 ‘기술혁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3,000점을 넘어서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기술혁신 선두그룹을 바짝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CHI리서치는 ‘지난 20년간 한국은 전자 및 기계분야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기울여 왔다’며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1위는 지난해 8만6,659개의 특허권을 신규취득, 기술혁신 지수 10만525점을 얻은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은 CHI리서치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85년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고수해왔다. 일본은 3만점을 획득해 2위에 올랐으며, 대만은 전자분야의 강세 등에 힘입어 지난 97년 이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기술 선진국 지위를 누려온 영국, 프랑스 등은 제약·유전공학 등에서만 두각을 보여 각각 7위와 8위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는 ‘특허획득 뿐 아니라 이를 상품으로 연결시켜 국제시장에 자주 내놓는 기업들이 많아야 기술발전이 빨라진다’고 지적했다.

정정합니다!

지난 제10호(2003년 5월 1일자) 2면에 ‘후원금 및 후원 협찬 선물 명단’ 중 (주)살롬을 살롬산업(주)로 정정합니다.

MP3플레이어 특허료 다시 쟁점화

지난해 특허료 협상타결로 일단락 지어졌던 MP3플레이어 특허료 분쟁이 MP3플레이어 업체들의 코스닥 진입을 앞두고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 MP3플레이어 특허권자인 엠피맨닷컴(대표 전춘금)과 디지털웨이·현원·바嗝테크·에이맥·거원시스템 등 5개사는 향후 5년간 MP3플레이어 1대당 25센트의 특허료를 지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으나, 엠피맨닷컴의 특허중 일부가 사실상 무효판정을 받자 특허료 재조정, 협의안 재조정 등을 들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이 엠피맨닷컴의 특허 2건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보이스 리코딩 등의 다기능이 지원되는 휴대형 음향재생장치’에 관한 특허를 사실상 무효처리 했기 때문이다. 이 특허는 21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허심판원은 이중 14개항에 무효심판 판정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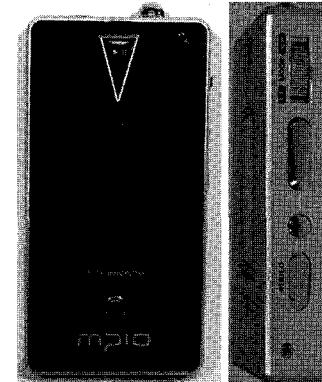
이에 따라 엠피맨닷컴은 2심 격인 특허법원에 항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특허 협상 5개사의 대표격인 디지털웨이는 합의서에 기재된 ‘특허가 무효 판정되거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 특허료 지급을 즉시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 특허료를 절반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특허를 포괄적으로 상호 허용키로 하는 ‘통상실시권’을 줘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디지털웨이는 특허료를 엠피맨닷컴에 지불하지 않고 특허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유치했으며, 바嗝테크·현원·에이맥 등도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당초 양측은 특허료 타결을 통해 MP3P 특허와 관련한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로운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의 법정 공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산고 끝에 타결됐던 특허료 협상이 백지화될 수도 있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자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은 특허 1안과 2안을 각각 50대 50으로 특허료 비중을 두고 2안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건 후 추후 판결을 기다리는 협의안을 제시, 이달까지 양측은 협의안의 수정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디지털웨이 관계자는 ‘특허료를 공탁금으로 걸어 놓은 만큼 엠피맨닷컴이 특허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들어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법원에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합의서에 따라 성의 있는 자세로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엠피맨닷컴은 ‘두 번째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았더라도 ‘эм페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및 방법’이라는 첫 번째 특허가 있는 만큼 특허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며 ‘요구하고 있는 통상실시권의 경우 해당 특허가 엠피맨닷컴과 미국 소닉블루의 공동 특허이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소닉블루가 현재화의 상태여서 진행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 특허료 분쟁에 휘말린 엠피맨닷컴의 MP3플레이어.